
제2023-3회

중앙운영위원회

2023. 1. 28.

보 고 안 건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1. 27.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장 강동재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KAIST 협동조합 설립 TF 회의 참석
 - 일시: 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본관 1층 소회의실
 - 참석자: 신병하 학생생활처장, 이수진 학생정책처장, 김건철 고객센터팀 팀장, 방동석 학생지원팀 팀장, 최동혁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유은실 카이스트 협동조합 이사장, 강동재 학부 총학생회 회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회장, 천다호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호 학생복지위원회 코인노래방 TF장, 최서웅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대리)
 - 기존 영리법인 '카이스트 협동조합'을 청산하고 비영리법인 'KAIST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KAIST 협동조합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카이스트 코인노래방 및 KAIST e-Sports Center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리적인 문제로 해당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이관해야 함을 전달받음.
 - 후속 활동으로, 비영리법인 'KAIST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학부 총학생회의 입장 정립을 위해 학생복지위원회 담당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함. 1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 'KAIST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학부 총학생회의 입장과 KAIST 협동조합 설립 TF에 전달할 단위별 요구사항을 논의하여 정리함.
- 집행조정위원회(1월 정기회) 개최
 - 일시: 1월 25일(수) 오후 8시
 - 장소: 장영신학생회관 301호 및 원격영상회의 (혼합 방식)
 - 참석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 회의 안건: 2023년도 해오름식 운영 논의안, KAIST 협동조합 통합 운영방안에 관한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 입장 논의안, 2023년도 석림태울제 예산안 검토
- P/NR 제도 관련 학부 총학생회 활동 계획, 입장 안내 및 후속 조치 진행
 -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학생들께서 P/NR 제도에 관해 의논하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안내한 후 학교 당국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활동을 진행함.

- 카이스트 신문사의 협조를 통해 'P/NR 제도 학생(재학생, 신입생, 졸업생) 대상 찬반 설문조사' 중간 결과를 공유받았으며(2023. 1. 25.), 해당 자료를 제2023-1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2023. 1. 26.) 및 학생정책처장 미팅(2023. 1. 27.)에서 공유하여 학생들의 의견과 불만 및 개선/건의 사항을 전달함.
- 설문조사 종료 이후 최종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학교 유관부서와 구체적인 미팅을 진행할 계획임. 교무처, 교학기획팀과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함. 현재까지 진행된 P/NR 제도 관련 활동을 정리하여 차주 중으로 전체 학생 대상 공지를 올릴 계획임.

○ 총장실장 미팅 진행

- 일시: 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본관 2층 총장실장실
- 학부 총학생회에서 총장실에 첫화사 간담회 내용 공유를 요청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미팅을 진행함.
- 첫화사 간담회 내용 공유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하여 1월 말 중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함. 해당 기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2월 첫화사 간담회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Pilot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것으로 후속 활동을 정하였으며 본 시도를 통해 첫화사 간담회의 내용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논의함.

○ 제2023-1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참석

- 일시: 1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본관 1층 제1회의실
- 안건: 2022년 하반기 산하 분야별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등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7건.
- 상정 안건은 아니지만, 총학생회장단의 요청으로 P/NR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유(1월 25일자 카이스트 신문 공유, 806명 응답)를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을 교무처 등 학교 유관부서에 전달하여 후속 논의 진행을 요청함.

○ 제2023-2회 학생상별위원회 참석

- 일시: 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본관 1층 제1회의실
- 안건: 학생징계심의 1건 및 학생 포상자 선정 9건(포상 관련 안건은 학생위원 미배석)

○ 카이스트 신문과 총학생회 당선 관련 서면 인터뷰 진행

- 1월 31일 발간 예정인 카이스트 신문 방중호와 관련해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KIND>의 출범에 대한 기사 작성을 전달받았고, 이를 위해 서면 인터뷰를 요청받아 진행함.
- 지난 선거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학부 총학생회에서 다루고 있는 학내 현안, 소통 창구, 리크루팅 계획 및 앞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함.

□ 의결문안

-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보고안건 제2호 단위별 운영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1. 28.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제80조제5항, 제91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7조제2항에 따라 각 단위에서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단위별 운영 보고

중양집행위원회	<p>(정책기획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 업체 사업 제휴 업체 정보를 list-up하고 하늘안과, BGN밝은눈안과, 따따면허 등 제휴 대상 업체의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함. 제휴 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선정한 후 공지할 예정임. - P/NR 제도 관련 대응 202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P/NR 제도에 관하여 학교 유관부서(교학기획팀)에 문의함(1월 11일). 신입생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자료 제작 후 총학생회에 공유하여 전체 학생 대상 안내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이후 P/NR 성적 표기방식 관련 설명자료를 공유받았으며(1월 27일), 해당 자료를 KAIST 홈페이지 및 Portal 공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확인함. 향후 해당 제도의 정확한 안내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여, 학생들께 공지되도록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임. - 학사과정 GPA 백분위 환산 점수 변환 관련 제도 개선 학사과정 GPA의 백분위 점수 환산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타 대학(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사례를 파악했으며, UNIST의 경우 학부 총학생회에 해당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함. 학교 유관부서(학적팀)에 문의하여,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확인받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학생지원팀 협조를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임. <p>(재정사무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행위원회 회계 업무 1월 복합기 대금 결제를 완료하였고, AWS(Amazon Webservice) 결제 정보를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함.
---------	---

	<p>- 활동 인증서 발급 이메일을 통해 활동 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학생들께 활동 인증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발급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p> <p>- 총학생회 재정·회계 시스템 개선 예산안 서식 개편을 위하여 감사원과 미팅을 진행함(1월 26일). 개편된 예산안 서식에 맞추어 기존 예산안을 대입·비교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p> <p>(미디어홍보국) - 카드뉴스 매뉴얼 제작 총학생회 공식 SNS(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에 사용할 카드뉴스의 기본 양식을 제작하고 추후 공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식을 체계화함.</p>
학생복지위원회	<p>- 코인노래방 재개장 관련 회의 진행 일시: 1/17(화) 10시 ~ 11시 30분 카이스트 코인노래방의 재개장을 위해 KAIST 협동조합, 총학생회, 학교측과 회의를 진행함. 추가 회의를 통해 재개장 방식을 확정할 계획임.</p>
행사준비위원회	<p>- 2023 석림태울제 2023 석림태울제 기획을 위해 팀 구성을 완료함. 1차 예산안을 작성하여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받음.</p> <p>- 2023 카이스트-포스텍 학생대제전 2023 카이스트-포스텍 학생대제전 기획을 위해 팀 구성을 완료함.</p>
학생문화공간위원회	<p>- 긴급상근 실시 키 대여 관련 잦은 문제 발생으로 주 3회 상근을 일단 실시함. 하지만 겨울학기 기간에는 대전 거주자만 상근에 참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강제 상근을 하기 힘든 상황임.</p> <p>- 공연집중기간 추첨 준비 공연집중기간 추첨 관하여 동연측에서 새로운 제도를 건의해왔지만, 이미 공지가 나간 상태라 재공지에 어려움이 있어 (저번 재공지시 여러 문제가 있었음)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함.</p> <p>- KAIST e-Sports Center 관련 업데이트 학교 수익사업 방침이 '협동조합을 통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KAIST e-Sports Center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넘길 계획임.</p>

건설및환경공학과	- 학부생 워크샵 준비 건설및환경공학과 학부 재학생 및 신입생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신입생의 학부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크샵을 2월 16일에서 2월 17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함.
기계공학과	- 신입생 웰컴키트 계획 일시: 1/18(수) ~ 1/20(금) 신입생들을 위한 웰컴키트 구성 물품 목록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함.
기술경영학부	정기 운영 보고 사항 없음.
물리학과	- 신입생 단독방 초대 학과 단체채팅방에 신입생을 초대 완료함.
바이오및뇌공학과	- 학과 네이버 카페 운영 사업 기간: 2022. 12. 7.~2022. 12. 27. 바이오뇌공학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기 위해 2022 가을학기의 개별연구 및 과목 후기를 조사함. 이후 참여자분들에게 상품을 지급함.
산업디자인학과	(기한 내에 운영 보고를 제출하지 않음)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기한 내에 운영 보고를 제출하지 않음)
생명과학과	(기한 내에 운영 보고를 제출하지 않음)
생명화학공학과	- 22학번 과대표단 후보 등록 및 학생회 지원 시작 일시: 1/23(월) ~ 2/3(금) 생명화학공학과를 대표하여 1년간 학과를 이끌어 나갈 22학번 과대표단과, 과대표단과 더불어 1년간 학과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할 학생회 모집을 시작함.
수리과학과	- 겨울학기 학생회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매주 수요일 21:15에 수리과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함. - 신입생 워크샵 겸 OT 준비 2월 24일에 예정된 수리과학과 신입생 워크샵 겸 OT의 프로그램과 식사 장소를 논의함. 수리과학과 신입생 및 CA님들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조사함.
신소재공학과	운영 사업 없음
융합인재학부	- 집행부 친목과 봄학기 학생회 행사 기획을 위한 회의 진행 일시: 정기회의 날짜 픽스 중 집행부 친목과 봄학기 학생회 행사기획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활동 중임.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기한 내에 운영 보고를 제출하지 않음)
전기및전자공학부	<p>- 22학번 신입생 단톡방 개설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사업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22학번 전자과 단톡방을 개설함.</p> <p>- 전기및전자공학부 22학번 과대표단 모집 1/16(월) ~ 1/20(금)까지 22학번 과대표단을 모집하였지만, 지원 인원이 부족하여 1/25(수) ~ 1/28(토)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음.</p>
전산학부	<p>- 전산학부 학생회 X 라인 2023 캘린더 배포 일시: 1/2(월) ~ 라인에서 전산학부 학우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무료로 100부의 캘린더와 명함을 제공받음. 이를 학우들에게 배부하고자 카드뉴스와 게시글을 업로드하였고, 모든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배부를 진행하고 있음.</p> <p>- 회장단 인수인계 워크숍 진행 일시: 1/11(수) 16시 ~ 1/12(목) 11시 대전 인근의 숙소에서 2022년도 전산학부 회장단 및 부서장단과 2023년도 전산학부 회장단 및 부서장단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함. 2022년에 진행된 사업들을 돌아보며 선임 회장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에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함.</p> <p>- 22학번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22학번 전산학부 신입생들에게 공지 및 친목 유도를 위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함.</p> <p>- 과대표단 모집 공지 일시: 1/25(수) 2023년도 2학년 과대표단 선거를 2/8 ~ 2/10 3일간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를 모집하는 게시글과 카드뉴스를 업로드함.</p> <p>- 집행위원회 모집 일시: 1/25(수) ~ 2/8(수) 2023년도 전산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해 1/25에 게시글과 카드뉴스를 업로드함. 또한 2/8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음.</p> <p>- 학부장님 면담 진행 일시: 1/26(목) 19:00 ~ 20:00 당해년도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조율과 사업에 대한 학과 차원의 피드백을 받고자 학부장님과 미팅을 진행함. 이를 통해 올해</p>

	<p>학생회 사업을 확정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 피드백을 마침.</p> <p>- 전산학부 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일시: 1/27(금) 학생회의 공지글과 외부 홍보글, 학생회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p>
항공우주공학과	<p>- 학생회장 인수인계 완료 전임 학생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완료함.</p> <p>- 1월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회의 진행 일시: 1/16(월) 21시 ~ 21시 20분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 회의를 진행하여 봄학기 사업 계획과 22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 운영 및 집행위원 모집 방식에 대하여 논의함.</p> <p>- 2023년도 봄학기 항공우주공학과 신입생 명단 확인 및 연락처 조사 실시 학과 사무실로부터 2023년도 봄학기 항공우주공학과 신입생 명단을 받아 확인함. 이후 특방 초대를 위한 연락처 조사를 위해 신입생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함.</p>
화학과	<p>- 신입생 연락처 조사 신입생 단체 채팅방 개설을 위한 연락처 조사를 진행 중임.</p>
새내기학생회	<p>- 2023 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단 선발 2023 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을 위해 기존 새내기학생회 집행부원 16인과 외부 기획단 17인으로 구성된 총 33인의 새내기새로배움터 기획단원을 선발함.</p> <p>- 2023 전기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 2023년도 전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삼일간 진행되는 새내기새로배움터를 기획 중임.</p>
동아리연합회	<p>- 내부 의결기구 운영 1월 분과회의를 1월 11일 ~ 1월 16일 간 진행함. 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1월 18일에 진행함.</p> <p>-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인준 1월 18일에 진행된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김우진(20, 전기및전자공학부), 안희진(21, 수리과학과) 학우를 동아리연합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으로 인준함.</p>

	<p>- 2022년 하반기 활동보고서 검토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활동보고서의 1차 제출 및 수정 제출 검토가 모두 완료됨. 추후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각 동아리에게 안내될 예정임.</p> <p>- 2022년 여름 - 2022년 가을 동아리 지원금 증빙 2022년 여름 - 2022년 가을 동아리 지원금의 사용은 지원금이 늦게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12월 31일까지의 지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기존 12월 17일까지)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지원금 증빙자료의 1차 제출 및 수정 제출 검토가 모두 완료됨. 추후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각 동아리에게 안내될 예정임. 지원금 지급 액수보다 증빙이 인정된 지원금 액수가 적은 경우, 그 차액은 환수됨.</p> <p>- 동아리소개책서 발행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들의 정보를 담은 동아리소개책서를 현재 편집 중에 있음. 완성된 동아리소개책서는 새내기새로배움터 진행 시에 새내기들에게 배부될 예정임.</p> <p>- 동아리박람회 준비 동아리박람회가 새내기새로배움터 마지막 날인 2월 24일에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임. 동아리박람회에 참석할 동아리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참석 예정인 동아리 수에 맞추어 동아리박람회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p>
<p>감사원</p>	<p>- 신입위원 초대 및 업무안내 신입위원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감사회칙 등의 내용들을 전달함.</p>
<p>문화자치위원회</p>	<p>정기 운영 보고 사항 없음.</p>
<p>소통국제화위원회</p>	<p>- 학부 총학생회 및 산하단체 번역 모니터링 상시 업무로, 학부 총학생회 및 산하단체의 공식소통 매체를 통해 각 단체의 공지글의 번역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난 가을학기 번역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p> <p>- 신입위원 리크루팅 다가올 봄학기에 다수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체의 존속을 위해 면접을 통해 4인의 신입위원을 선발함. 해당 인원들은 겨울학기 중 번역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고 봄학기부터 번역근로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임.</p>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정기 운영 보고 사항 없음.
-------------	-----------------

의결문안

- 단위별 운영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

보고안건 제3호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1. 28.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이하 전학대회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관심·전문지식을 가진 여러 대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본회 의결기구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안건을 검토·토론·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직속 위원회를 말함.
- 중앙운영위원회·전학대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하도록 하여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함.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전학대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전학대회 소위원회 구성 결과

소위원회명	위원
기층예산소위원회	권혁원, 김기현, 박병찬(위원장), 박재익, 한정현
중앙회계소위원회	권혁원, 박재익, 박정호, 안준서, 오윤석(위원장), 한정현
회칙개정소위원회	고은서, 박세현, 박찬욱, 윤이습, 이창섭(위원장), 한정현, 홍의상
선거소위원회	박연재, 왕예준(위원장), 홍의상
인준소위원회	이돈영, 이효린, 홍의상(위원장)
특별기구소위원회	김도운(위원장), 민지연, 박연재, 박정호, 윤서진, 이동현
문화소위원회	강동재, 김시은, 김영서, 민지연, 박병찬(위원장), 최우정, 황준영
결산소위원회	김지원, 박성빈(위원장), 박정현, 손선호, 송채빈, 유선민, 윤대한, 한정현

*가나다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안: 붙임

참고사항

- 전학대회 소위원회 구성 타임라인
 - 전학대회 소위원회 구성 안내 (2023. 1. 13.~2023. 1. 17.)
 - 전학대회 소위원회 구성 결과 안내 (2023. 1. 19.)
 -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2023. 1. 25.~2023. 1. 27.)

의결문안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2023. 1. 9.)

1 개요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이하 전학대회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관심·전문지식을 가진 여러 대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본회 의결기구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안건을 검토·토론·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직속 위원회를 말함
- 중앙운영위원회·전학대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하도록 하여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함.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전학대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2 배경

- 한 번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개 이상으로 회의 중 모든 안건을 상세하게 검토·토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공유·배부하여 구성원에게 검토 시간을 제공하지만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학대회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회의 구성원에게 검토 안건을 분배하고 사전에 검토·토론·심의하도록 하여 전학대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봄
- 제34대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벤치마킹한 전학대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효과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전학대회 소위원회

- 전학대회 소위원회란?
 - **(정의)** 특정 분야에 관심·전문지식을 가진 여러 대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본회 의결기구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안건을 검토·토론·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전학대회 직속 위원회

- **(목적)** 중앙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에서 모든 안건을 바로 심의하면 안건 검토나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의결이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에서 다 할 수 없는 안건의 심층적인 심의를 하기 위함
- **(특징)** 전학대회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직무 및 소관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그 업무와 권한은 국회 소위원회를 벤치마킹함

□ **전학대회 소위원회 구성**

- 기층예산소위원회
- 중앙회계소위원회
- 회칙개정소위원회
- 선거소위원회
- 인준소위원회
- 특별기구소위원회
- 문화소위원회
- 결산소위원회

□ **전학대회 소관**

- 기층예산소위원회
 1. 학생회칙 제166조제2호에 따른 기층기구회계에 관한 사항
 2. 기층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층기구의 추가경정예산·선집행예산·사후승인예산 등 기층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기층기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층기구는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를 말함
- 중앙회계소위원회
 1. 학생회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중앙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의 추가경정예산·선집행예산·사후승인예산 등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를 말함
- 회칙개정소위원회
 1. 회칙·세칙·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자치규칙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칙 제192조에 따른 회칙·세칙·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칙 제193조에 따른 규정집에 관한 사항
- 선거소위원회
 - 1. 총선거에 관한 사항
 - 2. 총선거 위탁선거 및 자체선거로 선출된 자치기구 회장(단)의 선출보고에 관한 사항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인준소위원회
 - 1.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 제출되는 인준안에 관한 사항
- 특별기구소위원회
 - 1. 특별기구 재심의안에 관한 사항
- 문화소위원회
 - 1. 새내기새로배움터, 해오름식, 봄·가을 축제, KAMF 등 본회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 2. 문화자치기금에 관한 사항
 - 3. 문화자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결산소위원회
 - 1. 본회 산하기구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개별 소위원회 구성**

- 기층예산소위원회
 -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3명
 -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4명
- 중앙회계소위원회
 -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3명
 -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4명
- 회칙개정소위원회
 -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4명
 -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3명
- 선거소위원회
 -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2명
 -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3명
- 인준소위원회
 -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2명
 -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1명
- 특별기구소위원회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2명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3명
- 문화소위원회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2명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3명
 - 결산소위원회
 1.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 5명
 2. 전학대회 비례 대의원: 6명

□ 소위원회 위원장

- **(선출)** 전학대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함
- **(업무)**
 1. 소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 의사일정은 간사가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함
 2. 소위원회 업무
 - 다음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의장이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 때에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 심의방법과 검토보고서는 소위원회별 매뉴얼 참고 (개별 송부)

□ 소위원회 간사

- **(선출)**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함. 다만, 위원장과 간사는 겸직할 수 없음.
- **(업무)** 의사일정을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함

□ 소위원회 업무 절차

1. 안건제출: 전학대회·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됨
2. 소위원회 회부: 전학대회·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해당 안건이 소관에 속하는 소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함
3. 소위원회 심의
 - 소위원회 의장은 간사 및 위원들과 협의하여 전학대회·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회부한 안건의 심의 일정(의사일정)을 정함
 -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함
4. 검토보고서 제출: 소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 결과를 전학대회·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함

5. 안건 상정/안건 반려

- 안건 상정: 안건이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의장은 안건을 제출한 의결기구에 상정함. 의결기구에서는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대체토론 등이 진행됨
- 안건 반려: 소위원회 검토 결과가 안건이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안건제출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완비하여 안건을 다시 제출하도록 함 (회의진행규칙 제12조)

총칙

(목적) 본 규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적용범위) 본 규칙은 소위원회 회의와 운영에 적용한다.

(정의)

- ① 본 규칙에서 "회의체", "회의", "구성원", "의결", "의결문", "의결권"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 ② 본 규칙에서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대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본회 의결기구에 안건을 부의하기 전, 안건을 검토·토론·심의하기 위해 구성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직속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 회의 명명법) 소위원회의 각 회의는 "제0000(해당연도)-0회 소위원회명"이라 명명한다.

(준용규정) 소위원회 회의 진행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기구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소위원회

(목적)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층적인 심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의 직무) 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 등의 심의, 그 밖에 본 규칙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와 그 소관)

- ① 소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층예산소위원회
 - 가. 학생회칙 제166조제2호에 따른 기층기구회계에 관한 사항

- 나. 기층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다. 기층기구의 추가경정예산·선집행예산·사후승인예산 등 기층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라. 기층기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2. 중앙회계소위원회
 - 가. 학생회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중앙회계에 관한 사항
 - 나.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다.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의 추가경정예산·선집행예산·사후승인예산 등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라.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회칙개정소위원회
 - 가. 회칙·세칙·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나. 자치규칙에 관한 사항
 - 다. 학생회칙 제192조에 따른 회칙·세칙·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 라. 학생회칙 제193조에 따른 규정집에 관한 사항
 - 4. 선거소위원회
 - 가. 총선거에 관한 사항
 - 나. 총선거 위탁선거 및 자체선거로 선출된 자치기구 회장(단)의 선출 보고에 관한 사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인준소위원회
 - 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 제출되는 인준안에 관한 사항
 - 6. 특별기구소위원회
 - 가. 특별기구 재심의안에 관한 사항
 - 나. 특별기구 소관에 속하는 사항
 - 7. 문화소위원회
 - 가. 새내기새로배움터, 해오름식, 봄·가을 축제, KAMF 등 본회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자치기금에 관한 사항
 - 다. 문화자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8. 결산소위원회
 - 가. 본회 산하기구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어느 소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다음과 같다.

1. 기층예산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3명, 비례 대의원 4명
2. 중앙회계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3명, 비례 대의원 4명
3. 회칙개정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4명, 비례 대의원 3명
4. 선거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2명, 비례 대의원 3명
5. 인준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2명, 비례 대의원 1명
6. 특별기구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2명, 비례 대의원 3명
7. 문화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2명, 비례 대의원 3명
8. 결산소위원회: 당연직 대의원 5명, 비례 대의원 6명

(소위원회의 위원) 대의원은 둘 이상의 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소위원회 위원장)

- ① 소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1명 둔다.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내부호선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위원장이 선출·탄핵되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선임 및 개선)

- ① 위원은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 ② 의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제1항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간사)

- ① 소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둔다.

- ②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내부호선한다.
- ③ 간사가 선출·탄핵되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겸직금지) 위원장과 간사는 겸직할 수 없다.

(소위원회의 제안)

- ① 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심의보고서의 제출)

- ① 소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심의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 소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 의결기구에 부의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의결기구 구성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위원회 회부)

- ①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소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소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소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소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소위원회가 소관 소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소관 소위원회는 관련 소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의보고를 할 수 있다.

- ④ 소관 소위원회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소관 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소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의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 소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소집)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의사·의결정족수) 소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안건 제4호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

제 출 연 월 일 2023. 1. 19.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의결기구 간사는 본회 의결기구(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을 말함.
-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결기구의 사무처리는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본회 대표자(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본회 의결기구 간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중앙운영위원 1인이 본회 의결기구의 간사를 맡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과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중앙운영위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등) 사이의 의사를 조율하고 중요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함

의결기구 간사 선임

- 2023. 1. 12.~2023. 1. 13. 동안 중앙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간사를 모집함.
- 지원 결과에 따라,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이 2023년도 전반기 의결기구 간사로 선임됨.

의결기구 간사 제도 운영 계획안: 붙임

의결문안

- 의결기구 간사 선임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의결기구 간사 제도 운영 계획안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2023. 1. 9.)

1 개요

-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결기구의 사무처리는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본회 대표자(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본회 의결기구 간사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함
- 중앙운영위원 1인이 본회 의결기구의 간사를 맡으며,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과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중앙운영위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등) 사이의 의사를 조율하고 중요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함

2 주요내용

- **간사(幹事)란?**
 - 일반적으로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고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함
 - 본회 의결기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중앙운영위원 중 1인)를 두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
- **운영계획**
 - (2023. 1. 12.~2023. 1. 13.) 전반기 간사 모집 및 선임
 - (2023. 6. 19.~2023. 6. 21.) 간사 제도 피드백
 - (2023. 6. 21.~2023. 6. 23.) 후반기 간사 모집 및 선임
 - (2023. 6. 23.~2023. 6. 30.) 간사 인수인계
 - (2023. 7.~2023. 12.) 후반기 간사 임기

*향후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의결기구 간사 제도 운영 계획안

- (구성) 중앙운영위원 1인
- (선임)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임기)
 - 임기 시작은 호선을 기준으로 함
 - 전반기 간사의 임기는 1월부터 6월까지로 함
 - 후반기 간사의 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함
 - 개선·보임된 간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주요업무)
 -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 전학대회 소위원회 심사·회부 협의
 - 제출된 안건 확인
 - 구성원(중앙운영위원·전학대회 대의원)의 발언 시간·순서 협의
 -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성원보고 및 성원점검
 - 중앙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보고사항 협의 및 보고
- (업무 매뉴얼) 간사 선임 후 개별 배부

4

참고사항

□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제도

- (구성)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둠
- (선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
- (주요업무) 국회법에 규정됨
 - 위원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국회법 제49조제2항)
 - 위원장 직무 대리: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 (국회법 제50조제3항)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활동기한 합의, 조정위원 수 합의, 조정위원 선임 협의 (국회법 제57조의2)
 - 소위원회 심사·회부 협의 (국회법 제58조)
 - 의안 상정 협의 (국회법 제59조의2)
 - 위원의 발언 시간·순서 협의 (국회법 제60조)
 - 소위원회 보충보고 (국회법 제 67조제3항)
 - 위원회 회의록 대리 서명·날인 (국회법 제69조)
 - 입법예고 (국회법 제82조의2)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법 제121조제4항)

-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국회법 제128조)

□ **KAIST 위원회 간사 제도**

- **(구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둠
- **(선임)** 한국과학기술원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요령 등에서 정함
 - 학사연구심의위원회 및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간사는 교학기획팀장이 됨
 - 학생상별위원회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됨
- **(주요업무)**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함 (위원회 일정 조정, 안건 제출 안내 및 협의, 안건 상정, 안건 제안설명, 회의록 작성)

□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제도 및 KAIST 위원회 간사 제도 비교 분석**

- 대의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
 - 국회는 대의기관이고, 간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성원(국회의원)이 간사를 맡음.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의안 상정 협의, 위원의 발언 시간·순서 협의, 출석 요구,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짐. 또한 구성원이므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음.
 - KAIST는 대의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고, 간사의 사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간사를 맡음. 위원회 일정 조정, 안건 제출 안내 및 협의, 안건 상정, 안건 제안설명,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음. 국회와는 다르게, KAIST 위원회는 간사가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의 제안설명을 함. 안건제출자는 질의 및 응답만 함.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므로 안건 상정과 제안설명의 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위원장단 직무 대리 등의 권한은 없음.
- 본회 의결기구와 비교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는 대의기관이고, 소속 회원의 합의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유사함. 국회 간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안건 상정 협의, 구성원의 발언 시간·순서 협의, 출석 요구, 제출 요구부터 일정 조정, 안건 제출 안내 및 협의, 안건 상정, 안건 제안설명까지 의장이 맡음. 회의록 작성은 중앙집행위원이 맡음.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 안건 상정 협의, 발언 시간·순서 협의는 구성원 전반의 의견수렴이 중요함. 이에 의장이 전부 부담하기 보다는 구성원 중 그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직책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구성원의 의견은 구성원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봄.

□ 간사 제도의 명문화

- **(필요성)** 간사 제도가 제34대 학부 총학생회장단 임기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제도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방법)** 의결기구운영세칙에 '간사' 조항을 신설하고 의사일정, 안건 심의, 안건 상정, 발언 시간·순서에 관한 조항에 간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간사와 협의하여 등)을 삽입·추가하여 간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적 근거를 마련함
- **(내용)** 간사의 선임, 간사의 임기, 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간사의 권한 확대

- 간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명문화되고 정착될 경우에 간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처럼 의장(단)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의장단(총학생회장단)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의장 직을 대행하는 기존 학생회칙에는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함. 이에 간사에게 의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의장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사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기구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

심 의 안 건

심의안건 제1호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재심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3. 1. 13.

안 건 제 출 자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단장 이호성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67조에 따라 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023년도 1분기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지만 안건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심의를 보류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함.
- 「학생회칙」 제56조제4호 및 제167조에 따라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023-1회 중앙운영위원회에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안을 상정하였지만 코드 기입 오류 등의 사유로 부결됨.
- 「학생회칙」 제169조에 따라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함.

□ 주요내용

- 리더십센터의 지원을 받은 4분기의 봉사 사업 결산 및 1분기 봉사 사업 예산
-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별첨1
-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별첨2
-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별첨3
- 2022년도 4분기 결산: 별첨4

□ 참고사항

- 관련규정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9조(재심의)

1.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2. 재심의를 심의 기구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구의 경우, 전학대회에 책임자의 사과문 및 경위서를 게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의결문안

-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 재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

인 준 안 건

인준안건 제1호 KAIST 문화행사위원회 학생대표위원 인준안

제 출 연 월 일 2023. 1. 28.
안 건 제 출 자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KAIST 문화행사위원회는 본원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내부 위원, 외부 전문가 2~3인, 문화행사 책임교수, 대학원생 대표 1인, 학부생 대표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 자문위원은 매 학기 문화행사 공연 신청과 당해 연도 문화행사 기획 및 공연 선정에 대해 자문함.
 - 본회 대표자 중 1인을 KAIST 문화행사위원회 학생대표위원으로 인준하여 KAIST 문화행사위원회 학부생 대표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함.

□ KAIST 문화행사위원회 학생대표위원 인준안

이름	소속학과	학번	비고
최우정	화학과	20210649	화학과 학생회장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제61조(대외적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 타임라인
 - 2023. 1. 26.~2023. 1. 27. 본회 대표자 대상 학생대표위원 모집
 - 2023. 1. 30. 학생대표위원 인준
 - 2023. 1. 31. KAIST 문화행사위원회 개최
- 의결문안
 - KAIST 문화행사위원회 학생대표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